



의안번호

제133호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출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10. 13.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133호
----------	-------

제출연월일 : 2020. 10. 13.
제출자 : 논산시장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과장

1. 제안이유

-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현황】

- 설립일 - 1998. 12. 28.
- 일반현황 - 임원현황 : 이사 12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4,654,000천원
- 설립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관내 초·중·고·대학교 지원사업

□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 540,000천원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

□ 출연계획 (최근 5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530,000	540,000	540,000	540,000	540,000
출연금 (시비1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출연금 (협력사업비)	13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참고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02-2100-3550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9.30.] [조례 제677호, 2010.9.30., 전부개정]

평생교육과, 041-746-5761

제7조(출연금)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6.28.] [법률 제15528호, 2018.3.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논 산 시

농협은행[주] 논산시지부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논산시 금고〉

논산시 금고업무취급에 관하여 논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협은행 주식회사 논산시지부장(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금고업무) “갑”은 논산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이하 “금고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제2조(취급업무) 금고의 취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세입금의 수납
2. 각종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납 및 지급
4.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5.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6. 그 밖의 “갑”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제3조(법령, 조례, 규칙 준수) “을”은 이 약정에서 정한 조항 이외에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을”은 “갑”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갑”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6조의 예에 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금고 검사) “갑”은 금고 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서류~~ 보관) “을”은 금고업무 취급시 발생한 ~~관련서류~~는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보관(10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20조(약정내용의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출연 등) ① “을”은 “갑”에게 제안한 협력사업비를 매년 3. 31.까지(4년간) 논산시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서』 제23조(손해배상) 규정에 따른다.

② “을”이 금고지정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는 이 약정의 일부가 된다.

제22조(계약 조문 해석) 이 약정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갑”的 해석에 따른다.

제23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에 의한 별도 해지통보는 하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유지) “을”은 “갑”과의 금고업무 취급시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기타) 금고업무 수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을”의 산하 지점과 지역조합에서도 금고 업무를 대행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환원사업에 최선을 다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일

[갑] 논 산 시 장 황명선



[을] 농협은행(주) 논산시지부장 권용근



▶ 평가자료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Nonsan
논산시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

논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비 출연



▣ 연도별 출연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출연금액	비고
합계	560	
2018년	140	
2019년	140	
2020년	140	
2021년	140	

2017.9.27.

농협은행 논산시지부장 권용근 (인장)
논산시 중앙로 477(반월동)

논산시 금고지원을 위한 제안서

NH농협은행

5